제도안내

도시가스배관 보호제도

대구지하철공사장의 폭발사고의 원인이 타공사에 의한 배관파손인 것으로 밝혀졌고, 타공사시 가스배관손상으로 인한 가스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손상방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부분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었는지 여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 가스안전영향평가,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 도시가스안전공사(본사 (032) 692~2341)로 하면 된다. 본고는 도시가스배관 보호제도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註]

[1] 가스배관 매설상황 조사

①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기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배관유무조회서를 작성하고 공사위치도를 첨부하여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3, 규칙 제42조)

②가스배관유무조회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당해 공사위치에 가스배관의 매설유무를 확인하고 가스배관유무회답서에 공사위치도(가스배관위치표시)를 첨부하여 조회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공사시행자에게 회답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3, 규칙 제52조)

[2] 가스안전영향평가

①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에서 전기철도, 지하보도, 지하상가 건설공사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포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가스안전공사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4, 영 제9조의 2, 규칙 제53조·제54조)

②심사의뢰를 받은 가스안전공사는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당해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4, 영 제9조의 2, 규칙 제53조·제54조)

③심사를 받은 공사시행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가스안전공사의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4, 영 제9조의 2, 규칙 제53조·제54조)

[3] 합동감시체제 구축

①지하철공사, 지하도로공사, 지하상가공사, 중압이상의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되는 공사의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5, 규칙 제57조)

②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착공시부터 공사가 완료된 후 3월까지 합동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5, 규칙 제57조)

[4] 협의

전기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건설공사 시행자 이외의 공사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하고 굴착공사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5, 규칙 제55조)

[5] 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도로굴착은 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 6, 규칙 제58조·별표16)

①가스배관과 수평거리 1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후 시행할 것

②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30Cm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③항타기는 가스배관과의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④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⑤가스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의 부분은 반드시 인력으로 굴착할 것

⑥가스배관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⑦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할 경우 주위에 가스배관의 부속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및 손상방지에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제출처

구 분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지사
전기철도 건설공사	전공사	
지하보도 건설공사	총연장 200m 이상	총연장 200m 이상
지하차도 건설공사	총연장 100m 이상	총연장 100m 이상
지하상가 건설공사	연면적 2,000㎡ 이상	연면적 2,000㎡ 미만

주의할 것

⑧노출가스배관의 방호조치기준 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6] 긴급굴착공사의 현장조사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가스배관매설현황을 조사하고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규칙 제5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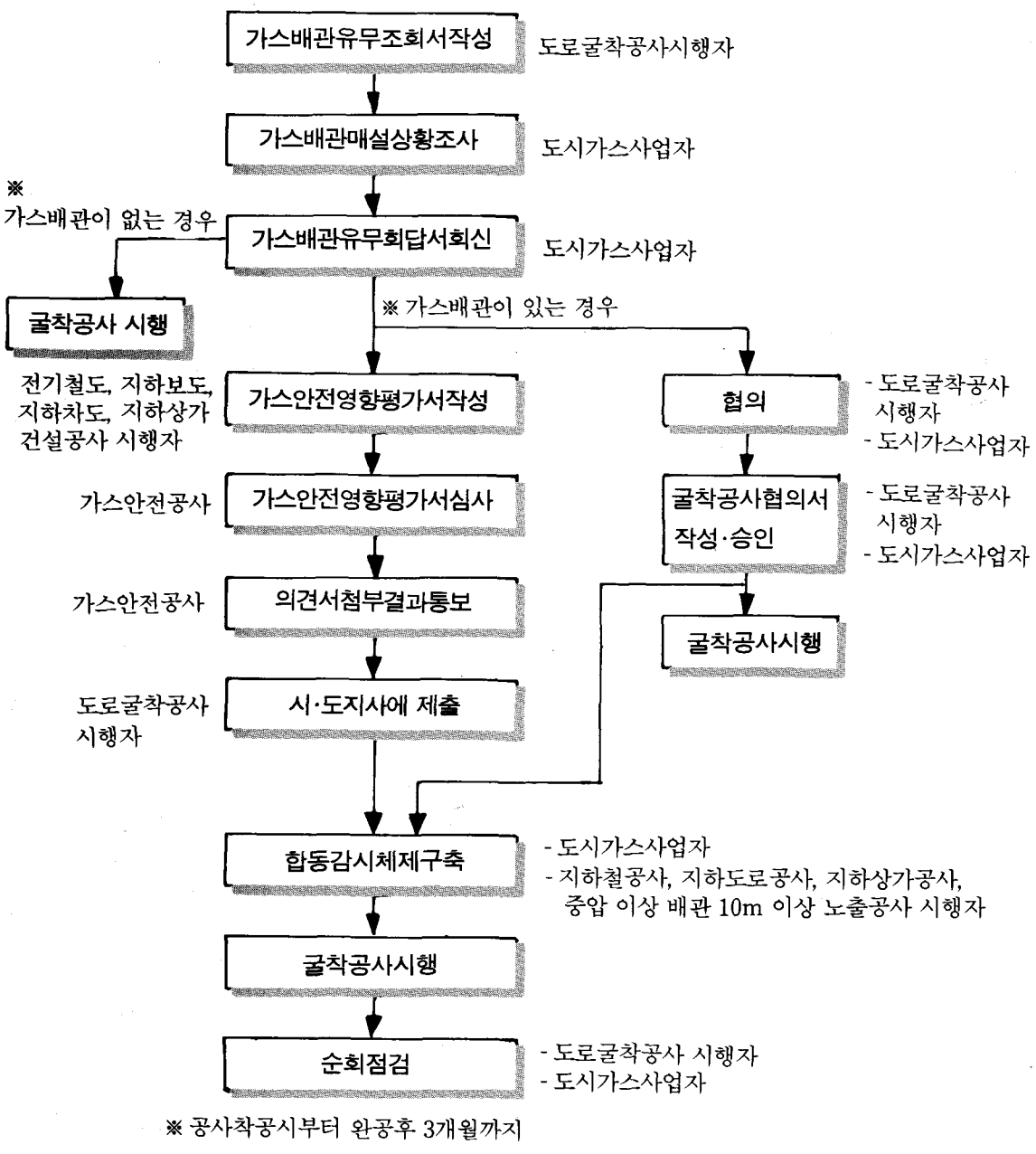
[7] 절차